

헌재 “尹 탄핵심판, 여야 떠나 국민만 바라보고 간다”

국민의힘 항의에 “헌재 결정 갖고 분쟁 만드는 것 주권자 뜻 아니다” 내란죄 논란에 “재판부가 판단할 사항” ...검·경에 수사자료 요구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여야 떠나 국민만 바라보고 간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특히 최근 불거진 ‘공정성 지적’에는 “헌재 결정 갖고 새 분쟁을 만드는 것은 주권자의 뜻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전재현 헌재 공보관은 7일 “헌재는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하고 있다. 여야를 떠나 국민만 바라보고 가겠다”면서 “헌재는 주권자인 국민의 뜻에 따라 헌법적 분쟁을 해결하고 헌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설립된 심판 기관”이라고 밝혔다.

특히 “헌법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내리는 헌재 결정을 가지고 새로운 헌법 분쟁을 만드는 건 헌재를 만든 주권자의 뜻은 아닐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헌재 탄핵심판이 편향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지난 6일 헌재에 항의 방문해 김정원 헌재 사무처장을 면담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지극히 편향적이고 불공정, 편파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며 “1주에 두 번씩

재판하는 것은 헌재가 예단을 갖고 재판을 편파적으로 하고 있다는 게 우리 당의 의견”이라고 말했다.

한편 천 공보관은 대통령 대리인단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형법 위반(내란죄) 여부가 다뤄지지 않을 경우 헌재가 국회의 탄핵소추를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선 “재판부에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또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재판부가 지난 6일 국방부 검찰단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 수사 기록 등의 사본을 보내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이어 “전날(6일) 피청구인(윤 대통령) 측에서 추가 의견서를 접수했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이날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기일 외에도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과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한 검사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사건의 변론준비 또는 변론 기일을 진행한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정식 변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왼쪽부터), 정정미,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대리인단 “12·3 계엄 관련 모든 행위가 심판 대상”

‘내란죄 소추 사유 철회’ 논란 반박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국회 측 대리인단이 7일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행위가 모두 심판 대상”이라며 최근 “내란죄 소추 사유 철회”와 관련한 논란을 반박했다.

김진한·장순옥 변호사 등 국회 측 대리인단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한변호사협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 우두머리의 국헌 문란 행위라는 소추 사실은 한 글자도 변경되지 않았다. 내란 행위 모두를 심판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에는 변경이 없다”고 주장했다.

대리인단은 “국회는 탄핵소추 사유로서 국헌문란의 구체적 행위, 즉 사실관계를 기재하고 있다. 내란죄의 ‘범죄’를 판단해달라고 하는 탄핵소추 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소추의결서에 내란죄가 언급된 것은 피청구인(대통령)의 국헌문란 행위가 내란죄에 해당할 정도로 중대한 헌법위반이라는 청구인(국회)의 ‘평가’일 뿐 별개의 탄핵소추 사유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탄핵소추안에 따른 심판 대상은 어디까지나 비상

계엄과 관련한 사실관계이고, 내란죄·직권남용죄가 언급된 부분은 일종의 평가로서 덧붙여진 것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대리인단은 “탄핵심판 절차의 성격에 맞게 헌법 위반으로 구성해 판단 받겠다는 것”이라며 “(탄핵심판은) 행위가 어떤 범죄에 해당하는가를 판단하는 재판이 아니다”라고 했다.

헌재가 국회 측 요구를 받아들이면 비상계엄 관련 사실관계는 그대로 다루되 형법상 내란죄 성립 여부는 판단하지 않고, 윤 대통령이 헌법상 각종 책무를 어겼는지를 판단하게 된다.

국회 측은 탄핵심판이 길어지면 국정 혼란이 이어질 우려가 있고, 소추 사유를 변경하는 게 아니라서 별도의 의결은 필요하지 않으며 내란죄의 성립 여부는 형사 법정에서 판단될 것이라는 주장도 덧붙였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 성립 여부’를 제외하면 탄핵 사유 중 80%를 철회하는 셈이어서 헌재가 국회의 탄핵 소추를 각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헌재는 이 같은 논란에 관해 전적으로 재판부가 판단할 사항이라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연합뉴스

국회 측 “내란 범죄는 형사법정에서 유무죄 판단”

탄핵심판 앞두고 장외 여론전

尹 측 “탄핵안 다시 의결해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정식 변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장외 여론전도 활발해지고 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3일까지 두 차례 변론준비기일을 마치고 오는 14일을 시작으로 설 연휴를 제외하고 매주 2차례, 화·목요일에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변론기일에선 증인 신문과 증거 조사 내용을 토대로 주요 쟁점에 대한 치열한 공방이 이뤄지는 만큼 양측 모두 남은 기간 재판 준비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팽팽한 ‘장외 변론’도 이어질 전망이다. 양측은 지난 변론준비기일 이후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제외하는 문제를 두고 심판정 안에 서번 아니라 장외에서도 팽팽한 공방을 이어왔다.

국회 측 대리인단은 지난 3일 탄핵소추 사유 가운데 계엄 관련 행위가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한다

는 주장을 사실상 철회하기로 했다.

국회 측은 “형법 위반과 헌법 위반 사실관계가 사실상 동일해 자칫 헌법재판이 형법 위반 여부에 매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헌법위반 사실관계로 다루고 주장함으로써 헌법재판 성격에 맞는 주장과 입증이 이뤄지게 하고자 한다”라며 “그것이 재판부가 저희에게 권유하신 바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헌재는 내란죄를 철회하라고 국회 측에 권유했다는 주장에 대해 전날 브리핑에서 “그런 사실은 없다”고 일축한 바 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은 소추 사유 철회와 관련해 “형법상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면 소추는 잘못된 것”이라며 내란죄를 제외하려면 탄핵소추안을 다시 의결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논쟁은 변론준비기일 이후 장외로 이어졌다.

국회 측 김진한 변호사는 취재진을 만나 “내란 범죄사실은 여전히 있는 것이고 형사 법정에서 유무죄 여부가 판단될 것”이라며 “다만 형사소송 단계처럼 내란죄를 다루다간 소송 기간이 자칫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내란이 아니라 헌법 위반으로

구성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같은 날 입장문을 내고 “헌법재판 공개 법정에서 내란죄를 소추사유에서 철회한 것은 탄핵소추 결의 자체가 무효임을 자인하는 것”이라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주말 사이 여론 일각에서도 탄핵소추문을 수정하려면 국회 재의결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민주당은 이에 반박하는 등 정치권에서도 내란죄 철회를 두고 충돌했다.

이런 가운데 국회 측 대리인단은 이날 오후 대한변호사협회 건물에서 기자회견을 열기로 해 이에 대한 입장을 재차 밝힐 것으로 보인다. 국회 탄핵소추단 측은 헌재 기일 외에 입장 설명을 위한 공식 자리를 마련하는 것은 처음이다.

일찌감치 장외전에 집중해 온 윤 대통령 측 대응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탄핵심판 대리인이나 변호인 선임계를 내지 않은 채 윤 대통령의 ‘입’ 역할을 해온 석동현 변호사는 지난 6일 개인 사무실까지 마련해 대안론 장구를 꾸렸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73 광주일보 73년 - 유튜브 2천만뷰 돌파

광주문화신협 이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금융 다채로운 금융 함께하는 금융

출자금 비과세 한도 상향
개인당 2천만원 까지 완전 비과세



자산규모
1조 5천억원

창립 이후
30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9% 이상 지역사회 환원



광주문화신협
대표번호 1644-7990

· 본 점 · 여신사업부 · 양산지점 · 운암지점 · 매곡지점 · 첨단지점 · 동광주지점 · 문흥지점 · 동림지점 · 각화지점